비조치의견서 (□비조치 □조치 ☑기타)

	담당 IT검사국 담당자 안기복 연락처 02-3145-7429 부서
요청대상 행위	□ 금융회사가 내부통신망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과 외부통신망에 위치한
	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*를 전용선 또는 VPN으로 연결하여 이용하는 것이
	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5호 위반인지 여부
	*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(IaaS) 제공자 구간의 내부망 정보처리시스템은 인터넷 및 외부 기관과 통신망을 분리하고, 고유식별번호 및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지 않음
	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 구간의 정보처리시스템에 연결된 통신망을
	인터넷 등 외부기관과 분리한 방식(논리적/물리적)에 따라 위반여부가
	달라지는지 여부
	 ②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 구간의 정보처리시스템에서 처리하는 업무
	(비중요/중요)에 따라 위반 여부가 달라지는지 여부
판단	□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	□ 「전자금융감독규정」제15조제1항제5호는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
	시스템과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, 개발,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
	하는 단말기에 대해서는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할
	것(이하 "물리적 망분리")을 규정하고 있고,
	○ 「전자금융감독규정」 제14조의2제8항은 동조제1항의 절차를 거친 클라우드컴퓨팅
	서비스 제공자의 정보처리시스템이 위치한 전산실에 대하여 물리적 망분리 규
	정의 적용을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.
	□ 문의하신 사실관계 하에서 귀사가 내부통신망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을
	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 방식 외의 방법으로 분리·차단한
판단이유	귀사 전용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와 전용선 또는 VPN으로 연결하는
	것은「전자금융감독규정」제15조제1항제5호에 위반하지 않습니다.
	○ 다만,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더라도 귀사의 클라우드가 귀사의 통제범위를
	벗어난 영역과 연결되거나 내부 사용자가 아닌 제3자 등의 접속을 허용하는
	경우에는 외부통신망과 분리 차단 및 접속금지 조치하였다고 볼 수
	없으므로 동 규정에 위반합니다.
	○① 「전자금융감독규정」 제14조의2제8항에 따르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
	제공자의 정보처리시스템은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에 대한 물리적 망분리
	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방화벽 설치 등의 적정한 방법으로 망을 분리
	(논리적)할 수 있으므로 분리 방식에 따라 위반여부가 달라지지 않습니다.

- ○^②「전자금융감독규정」제15조제1항제5호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 구간의 정보처리시스템에서 처리하는 업무가 비중요업무 혹은 중요업무 인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지 않습니다.
- **** 비조치의견서의 효력**(「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」 제6조의2, 제11조제1 항·제2항 참조)
 - 1.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행위가 법령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회신내용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.
 - 2.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
 - 가.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
 - 나. 신청인이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
 - 다.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상이한 행위를 한 경우
 - 라. 관련 법령등이 변경된 경우
 - 마.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변동,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의견을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
 - 3. 금융감독원장이 일정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제재 등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비조 치의견서를 회신하였으나 신청인이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은 이 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